

2023년 산업재산권 침해 대응 민사소송 비용지원 사업공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해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2023년 산업재산권 침해 대응 민사소송 비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개인)은 대상 자격을 확인하시어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28.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지식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침해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도모하고, 기업 성장에 기여

2 지원요건 및 지원절차

지원요건

- (지원 자격)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지원 대상자

* 발명진흥법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0 (상담센터 지원 대상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고시 제2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 및 자격별 증빙서류]

지원대상	제출 서류	
중·소기업	1. 사업자등록증 사본(발명이 사업자등록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및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표준재무제표 등)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독립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증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가족)확인원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증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가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	본인	5·18 민주유공자증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가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증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가족)확인원
참전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학생 (특수대학원생 제외)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재적증명서	
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복무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 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처: 복지로 또는 주민자치센터) 2.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3.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로 한정함) 4.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발급처: 복지로 또는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족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지원대상	제출 서류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예비청년창업자	1. 만 39세 이하 연령증빙서류 2.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3. 창업보육센터 입주 증빙서류 ※ 다만,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에 한정함
청년창업자	1. 만 39세 이하 연령증빙서류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한정하며, 발명이 사업자등록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및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표준재무제표 등)
개인 월수입이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소득확인자료 가.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나. 지역가입자 : 지역보험료부과내역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고지서 ※ 지역보험료부과내역확인서는 신청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야만 발급가능하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지원 범위)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분쟁 중인(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건, 계속 중인 건 모두 가능) 침해소송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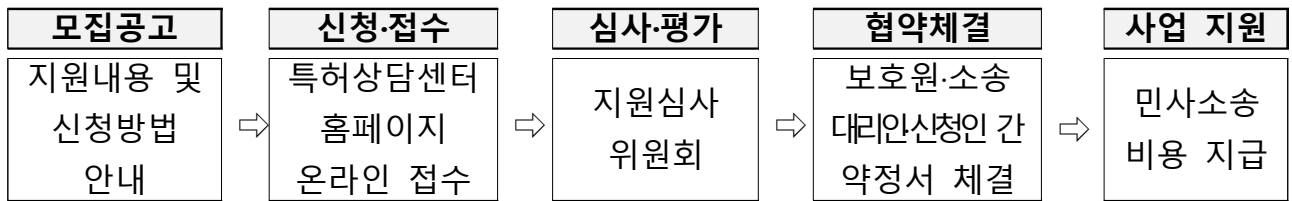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의 인지도, 자산규모, 매출액,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그 국내 법인을 대기업·중견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나이스 기업정보(<https://www.nicebizinfo.com/cm/CMD100M001GE.nice>)를 통해 기업 규모 확인 가능**

- (지원 분야) 산업재산권 관련 손해배상, 침해금지, 가처분 등 민사소송
- (지원 한도) 동일 회계연도 내 1,000만원 이하, 최근 3년 내 지원 비용 합계 최대 2,000만원 이하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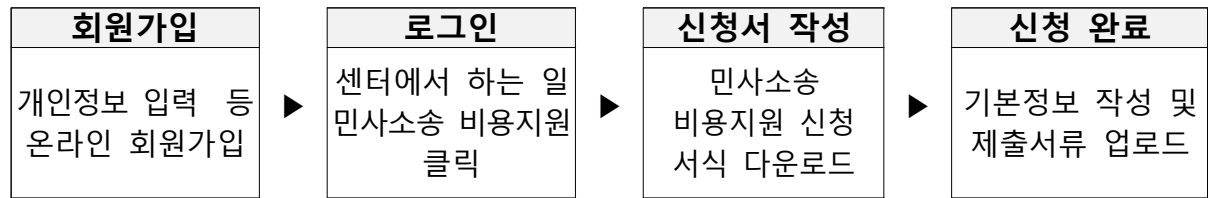
* 소송비용 지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소송 승·패소 결과를 회신(수행 대리인 → 상담센터)해야 하며, 상담센터는 소송비용 지원금 회수 및 성공사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3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 기간) 2023년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 마감)

□ (접수 방법)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www.pcc.or.kr)



□ (제출서류) 민사소송 비용지원 신청서(붙임 1 참조) 및 증빙서류*

* 관련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사전동의서 제출 필수[붙임2]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이전에 이미 소송 진행이 완료(법원 확정판결)된 건

*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가능

○ 분쟁 관할 법원이 국내 소재가 아닌 건(해외 소송 지원 불가)

※ 의도적, 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개인) 또는 대리인은 사실 확인 후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02-2183-5862, 5853

[붙임1] 사업신청서

『민사소송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신청기업)	성명(회사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원자격		이메일	
	주소			
	대리인	성명	소속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피신청기업)	성명(회사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상권리	권리구분	등록번호	발명/고안/디자인/상표의 명칭
------	------	------	------------------

사건번호	
------	--

신청내용	<i>신청 취지, 침해 사실 및 교섭 경과 개요, 그 밖의 참고사항 (별지 작성)</i>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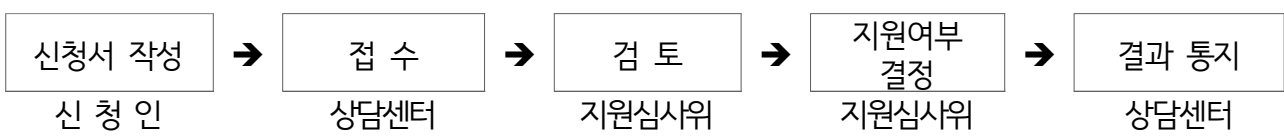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주장사실 증명서류
------	---

처리절차



신청 취지

신청인
관련
사항

<소송 취지>

- 분쟁 배경 등

<소 제기 개요> 사건번호 및 소송 히스토리

- 침해(피침해) 사실관계 서술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입

현재까지
분쟁
경과

<사건 진행 경과>

- 청구 일자

- 사건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입

소명자료

※ 분쟁 사실에 대한 증빙 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장, 비교 사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서비스 사전동의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직접 조회·열람하여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구비서류 조회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원사업 구비서류 조회 동의 여부 이용대상 행정정보 동의여부 체크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 이용 행정정보	지원자격 여부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사업 서류작성 지원, 심판·심결 직접대리, 민사소송비용지원 등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국가 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분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붙임3] 민사소송 비용지원사업 약정서

민사소송 비용지원사업 약정서

이 계약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인 산업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 비용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법률 소송 대리인(이하 “을”이라 한다.) 및 신청인((이하 “병”이라 한다.)간의 필요한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계약주체) “갑”, “을”, “병”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갑 :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을 : 법률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000)

병 : 신청인 (기업명칭)

제2조(신청사건) “을”은 “병”을 대리하여 다음의 민사소송비용지원 신청사건에 대한 소송을 수행한다.

1. 권리 번호 :
2. 발명 등의 명칭 :
3. 신청인 :
4. 구조신청 취지 :
5. 사건 번호 :

제3조(지원금 지급 등) ① “갑”은 “병”을 대리하여 신청사건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을”에게 아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지원금액 :
2. 지급방법
가. 은행명 :
나. 예금주 :
다. 계좌 번호 :

② “을”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회수의 조력) ① 신청사건의 소송에서 “병”이 승소한 경우, “을”은 “병”

의 대리인으로서 별도의 수입료 없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받아 “갑”과 “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청사건에 대한 소송이 소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조정 등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 합의서 또는 조서 등에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성공사례금 지급 등) ① 신청사건의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 경우, “병”이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갑”에게 반납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회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50%를 한도로 성공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공사례금의 지급은 소송비용이 회수된 당해 연도 내에 “을”이 청구해야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① “을”이 신청사건의 소송대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와 본 계약이 “을”의 사유로 인하여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을”은 지급된 금액 전부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지급 이후 신청사건이 포기 또는 취하되는 경우, “갑”은 “을”의 포기 또는 취하 사유를 검토하여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다만, “을”이 소장을 제출한 이후로서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가. 변론기일 1회 이상 출석

나. 기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소송수행 행위를 증명하고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할 시.

제7조(선임료 약정) ①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적정한 금액으로 선임료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지원금 지급을 이유로 “병”과 사건의 난이도, 예상 소요기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부당히 과도한 선임료의 지급을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소송비용의 회수) ① “병”은 신청사건의 소송이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에 명시된 금액을 환수하여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신청사건이 소 취하, 청구의 포기, 재판상 화해, 조정으로 소가 종료되어 합의서 또는

조서에 “병”의 소송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이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에서 “병”이 법원에 납부한 인지세, 송달료, 보관금을 제외한다.

④ “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비용 환수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소송비용을 환수한 후 “갑”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은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패소자의 경제적 형편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회수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송비용의 환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되, “병”은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병”이 본인 부담으로 소송비용 환수를 진행하여 소송비용을 환수한 경우 소송비용 환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반납한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을”은 신청사건의 소송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독) ① “갑”은 신청사건에 대한 “을”의 소송업무수행에 대하여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을”은 “갑”의 감독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소송업무수행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의 부분을 법원에 제출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소송업무수행 과정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소장, 준비서면 및 이에 준하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신청사건이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 취하 또는 청구의 포기, 재판상 화해, 조정 등의 경우 “을”과 “병”은 “갑”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합의문 또는 조서 등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을”이 본 계약을 불이행 또는 위반하여 “갑”이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은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통지 없이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건 위임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갑”의 명예, 신용 또는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갑”의 승인 없이 “을”의 휴업이나 폐업기간이 1주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3. “을”이 제3자로부터 중요재산의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당하거나 또는 파산, 회생절차 등의 신청을 당하거나 스스로 신청한 경우
4. “갑”의 정당한 시정, 권고 등에 대해 “을”이 이를 즉시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갑”, “을”, “병”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갑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을
주 소 :

상호명 :
성 명 : (인)

병
주 소 :

상호명 :
성 명 : (인)